

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주요 개정 사항 공고

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」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2.

소 방 청 장

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과목 개편

- 1차시험으로 공직적격성평가(PSAT)를 도입하고, 전문과목 평가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필수과목만 시행
- PSAT는 인사혁신처에서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“공직적격성평가 기본 검정시험”을 공동활용하여 운영

<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개편 전후 비교표 >

현 행		개 편	
필기시험 (전문과목 평가)		1차 PSAT	언어논리/자료해석/상황판단
인문 (필수)헌법, 행정법	(선택)행정학, 민법총칙, 형사소송법, 경제학, 소방학개론 중 택 2	+	
자연 (필수)헌법, 자연과학개론	(선택)화학개론, 물리학개론, 건축공학개론, 전기공학개론, 소방학개론 중 택 2	2차 필기시험	
		인문	헌법, 행정법, 소방학개론, 행정학
		자연	영어, 한국사, 자연과학개론

※ 영어, 한국사는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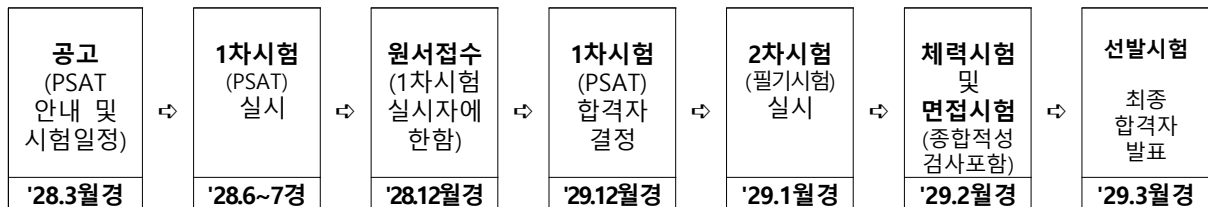
부칙 (시행시기 안내)

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028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.

[개정안 시행] → 적용 흐름도

- 2025년 11월(공고완료) /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중 : (개정전 규정 적용)
- 2026년 11월(공고예정) / 제3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예정 : (개정전 규정 적용)
- 2027년 11월(공고예정) / 제3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예정 : (개정전 규정 적용)
- 2028년 3월(공고예정) / 제35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예정 : (개정안 시행)

[2028년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흐름도]



※ 2028년 공고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, 2028년 6~7월경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할 예정인 '공직적격성평가(PSAT) 기본 검정시험'을 응시해야 함

※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(PSAT)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□ 소방공무원 가점제도 개편

-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(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채시험)에 적용하는 가점제도에서 자격증 등 가점대상을 1종 대형면허 외 모든 자격증 등을 폐지하고 가점비율을 1%로 함

<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 가점제도 개편 전후 비교표 >

현 행	개 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자격증 등) 4개 분야, 271개 자격증 ↳ 소방업무, 사무관리, 한국어, 외국어 ▶ (가점비율) 5% / 3% / 1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자격증) 제1종 대형운전면허 ▶ (가점비율) 1%

부칙 (시행시기 안내)

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.

[개정안 시행] → 적용 흐름도

- 2026년 1월(공고예정) / 2026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시행 예정 : (개정전 규정 적용)
- 2026년 11월(공고예정) / 제3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예정 : (개정전 규정 적용)
- 2027년 1월(공고예정) / 2027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시행 예정 : (개정전 규정 적용)
- 2027년 11월(공고예정) / 제3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예정 : (개정안 시행)
- 2028년 1월(공고예정) / 2028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시행 예정 : (개정안 시행)

□ 기타 사항

- 신체검사를 시험단계에서 제외하고 최종시험합격자(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)에 대해 채용후보자 등재 시에 “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” 서류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
- 기존 시험단계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채용후보자 등록시 다시 신체검사를 하는 방식에서 개선(2회 → 1회로 개선)

구분	주요내용	개정조항
소방간부후보생 과목 개편 (28.상반기 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직적격성평가(PSAT)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사혁신처 주관의 공직적격성평가(기본)로 대체시험 운영 ■ 계열 공통과목 확대·강화 및 선택과목 폐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인문) 헌법, 행정법, 소방학개론 + 행정학 - (자연) 헌법, 행정법, 소방학개론 + 자연과학개론 	대령 안 제36조, 제38조, 제44조, 제46조, 별표4
가점제도 개편 (27.하반기 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형면허 외 모든 자격증 등 가점 폐지, 비율 축소(5% → 1%) 	대령 안 제42조 부령 안 별표6
시험 근거 규정 등 보완 및 개선 (2026.1.1.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 근거규정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분야를 정하여 경력채용 하는 경우,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 가능 	대령 안 제14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사상자 등 가점 기준 근거 규정 마련 	대령 안 제42조의2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채용시험의 단계별 구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서류전형) 합격자 결정 방법 명시(응시자격 요건 적부 판단) - (종합적성검사) 시험단계에서 제외 / 면접시험과 병합 실시 - (신체검사) 시험단계에서 제외 / 채용후보자 등재 시 심사 	대령 안 제13조의2, 제36조, 제37조, 제38조, 제39조, 제43조, 제46조 부령 안 제23조
기타 개정사항 (2026.1.1.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한 기준 통일(18세) 	대령 안 제43조, 별표2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응시수수료 면제 기준 확대(2명 이상의 자녀 있는 사람) 	대령 안 제49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불필요한 응시서류 제출 범위 조정 	부령 안 제28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체검사 마약류 검사 기준 정비(TBPE → 마약6종 검사) 	예규 안 별지8